

# 2021년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 공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1년도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장애인고용법 제27조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장 제1절(채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제5조(시험의 방법), 제14조(신체검사), 제35조(응시수수료), 제47조(시험의 공고)

## 2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일반전형	15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묵호항, 삼척항, 속초항 등)	청사보안, 항만시설보안 및 순찰 등
장애인전형	2명		

\* 장애인전형 채용선발(합격)기준은 일반전형 기준과 동일

\*\* 장애인전형 단계별(서류·체력·필기·면접)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전형 채용인원에 반영하여 단계별 채용절차 진행(예시: 장애인전형 선발인원 2명 중 2차 체력시험 합격자가 1명일 경우 일반전형에 1명을 반영하여 합격자 결정, 각 단계별 동일 적용)

※ 아래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합격 가능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학력 및 경력제한은 없으며 주·야간 교대근무(휴일포함)가 가능한 자
-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최초공고) 전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애인전형 응시대상자 : 「장애인고용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

<p>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p> <p>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p> <p>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p> <p>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p>
---

- 장애인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전형 외 일반전형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일반전형과 장애인전형 중복 응시는 불가능 함

4

**선발방법 : 4단계(서류전형→체력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

①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연령, 지역제한, 응시자격, 결격사유 유무 등 응시자의 자격기준 (응시자격 등에 적합한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가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합격 결정

② 제2차 시험 : 체력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체력시험 종목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좌우 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여자	좌우 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 체력시험 결과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40퍼센트 미만을 받거나 총점 평균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실격으로 한다.

\*\* 체력시험은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 종목별 실격 없이 종목별 40퍼센트 이상이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는 모두 합격

**③ 제3차 시험 : 필기시험(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필기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과목이 40퍼센트 이상이며 전 과목 총점이 60퍼센트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3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제1과목(30문항)	제2과목(20문항)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항만보안 관련 내용만 출제

- 각 과목 문항별 점수는 5점으로 배정하며, 제1과목의 경우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점수 산정(제1과목 12문제, 제2과목 8문제 미만 정답선택 시 과락 처리)

**<예시>**

- 제1과목 125점(25문제 정답선택) 득점의 경우  $125/150 \times 100 = 83.33$ 점
- 제2과목 90점(18문제 정답선택) 득점의 경우 90점
- 평균 :  $(83.33 + 90) / 2 = 86.67$ 점

**④ 제4차 시험 : 면접시험(3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심사
- 최종합격자는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면접시험 동점자는 ① 필기시험 고득점자, ② 체력시험 고득점자, ③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 ①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⑤ 최종 합격자 발표

### ○ 합격자 발표

- 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최종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등 안내 (결격사유 조회 및 임용승인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등)

### ○ 추가합격자 결정(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1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예비합격자 중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5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1. 4.12(월) ~ 4.14(수)

- 원서접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1.4.14.)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방문 접수는 하지 않음**)

###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 문의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33-520-6115, 인사담당자

\*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 일정관련 공고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시

## 6 시험일정(2021년도)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발표	체력 시험	체력시험 합격발표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발표	면접 시험	최종 합격발표	임용 (신원조회 후)
4.12(월)~ 4.14(수)	4.22(목)	5.4(화)	5.10(월)	5.29(토)	6.1(화)	6.11(금)	6.17(목)	7.1(목)이후

\* 위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순으로 정리 후 등기우편 봉투에 넣어 제출(스태이플러 미사용)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또는 PC)로 기재 / 자필 서명</li> <li>○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 2매 부착(3.5×4.5)</li> </ul>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기재, 자필 서명 반드시 기재 후 제출</li> </ul>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li> </ul>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여부 체크 및 자필 서명을 반드시 기재 후 제출</li> </ul>
5. 공정채용 확인서 1부(별지서식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필 서명을 반드시 기재 후 제출</li> </ul>
6. 주민등록초본 1부(상세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주소이전 일자가 나오게 발급</li> <li>○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li> <li>* <b>2021. 3. 29.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b></li> </ul>
7. 가산점 관련 자료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점 해당자에 한함</li> <li>-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의사상자 등 증빙서류</li> <li>* 체력시험 시행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li> </ul>
8. 정부수입인지 1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또는 전자 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li>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li> </ul>
9. 장애인전형 관련 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전형 지원자에 한함</li> <li>-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li> <li>- 의사상자 등 증빙서류 1부</li> <li>*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함</li> </ul>
10. 반신용 봉투 1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제출</li> </ul>

\*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단계 시험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 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향만보안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정규직 미전환자 가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각 단계 시험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가점비율은 합산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세부 사항 참고
향만보안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정규직(청원경찰) 미전환자	각 단계 시험 과목별 만점의 5%	

\* 각 단계 시험 과목별이라 함은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체력시험, 필기시험을 말함

##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에서 발행한 서류 제출로 확인

## ○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가점 대상자는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의 점수를 가산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

- ‘2018년 항만보안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정규직(청원경찰) 전환 계획 알림’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
-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체력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특전은 체력시험 전일 18:00까지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함
  -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9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되더라도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33-520-6115(인사담당자)

## □ 필기시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라디오,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등)를 절대로 휴대해서는 안 되며, 발견된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필기시험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체력시험 유의사항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험과 관련된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체력시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 운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체력시험 시 장갑착용·개인소지용 파우더 사용은 일체 불허하며 그 외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시험응시생 유의사항**

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응시자는 일반 응시자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응시자는 발열검사 실시 후 반드시 시험장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실시한 후 입실하여야 합니다.

\* 고열 등 의심 증상자 : 체력시험은 별도 시간대에 실시하며 필기 및 면접시험은 별도 고사실에서 응시

2) 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시험 전 과정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는 개인이 지참하여야 함

\*\* 단, 기록측정이 필요한 체력시험의 경우 본인 체력측정 시에만 마스크 탈의 가능

3)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응시자 외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응시자가 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청원경찰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응 시 원 서(일반전형)

본인은 2021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b>※응시번호</b>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청원경찰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우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b>※응시번호</b>	<b>응 시 표</b> (청원경찰 정기) 채용시험			
응시직급	청원경찰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			
2021년 월 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접수처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 시 원 서(장애인전형)

본인은 2021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b>※응시번호</b>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청원경찰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우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b>※응시번호</b>	<b>응 시 표</b> (청원경찰 정기) 채용시험			
응시직급	청원경찰	성명		
생년월일	-			
2021년 월 일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①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접수처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등	
	○ ○ ○
지원 동기	
	○ ○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
입사 후 포부, 자세 등	
	○ ○ ○
2021. . .	
작성자(응시자) : (서명)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하고, PC 또는 자필로 작성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구 분	세 부 서 류 (응시자 성명 : )
응시원서	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등
이력서	성명, 생년월일, 자격·경력사항, 병역 등
기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임용 및 채용 관련서류,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인사혁신처 제공) 등 기타 채용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정기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수집항목) 응시원서 및 이력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등), 자기소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임용 및 채용 관련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자격증,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조회,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인사혁신처 제공)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제5항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정기채용 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21.    .    .

성명 (서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